

2025년 경남메타버스지원센터 전시회 참가 지원 기업 추가 모집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정보통신산업진흥원)와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2025년 경남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지역 XR·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국내·외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위해 “경남메타버스지원센터 전시회 참가 지원” 사업을 안내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7월 21일
경남테크노파크원장

1 지원개요

- (지원목적) 경남소재 기업 대상으로 국내·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, 지역 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를 통한 기업 역량 강화
- (지원기간) 협약일 ~ 2025년 11월 ※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(지원규모) 7개 사 내외(1개社당 최대 1,500천원 이내)
- (지원내용) 국내·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※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참고

| 지원분야 | 세부내용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항공료 | ■ 참가자 항공료(국외만 해당, 이코노미석 기준, 여행자보험 포함) |
| 참가비 | ■ 전시회 및 행사 참가 비용 |
| 부스 임차비 | ■ 부스 선점 및 구축 시 발생하는 임차비용 |
| 장치비 | ■ 시설 구축 시 발생하는 장치비용 |
| 통역료 | ■ 전시회 참가 시 발생하는 통번역 비용(국외만 해당) |
| 운송비 | ■ 전시 제품 및 장비 운송비 |

※지원 제외 항목

- 부가세 및 세금성 경비, 인건비, 체재비, 교통비, 기타 경비성 지출
- 해당 지원 비용의 지출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(간이 영수증, 명세서 등)
- 사업공고일 전 참가 완료한 비용 등

※지원사업비를 초과한 비용은 기업 자부담

- (지원대상) 사업공고일 기준 경남소재 본사, 지사, 공장 중 1개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전시회 출품이 가능한 XR·메타버스 콘텐츠* 보유 기업에 한하여 참가 신청이 가능

* 참가신청서 제출 시,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하여 XR·메타버스 관련 서비스의 증빙이 필요

- (지원방법)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(수행기관 → 수혜기업)의 방법

으로 지원

※ 기업 선집행 후, 결과(완료)보고서를 검토하여 수행기관(경남TP)에서 수혜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

2 추진절차 및 일정

○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(안)

- ① 공 고 및 접수 : 공고일 ~ 10월 31일(금) 18:00, 예산 소진시까지
- ② 서류평가 및 협약체결 : 전시회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(매월)로 평가
- ③ 사업 수행: 협약일 ~ 11월 30일(일)
- ④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: 수시
- ⑤ 지원금 지원 :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후 11월 이내 지급

| 공 고 및 접수 | 서류평가 | 협약체결 | 사업 수행 |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| 지원금 지원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공고일 ~ 10. 31. | ⇒ 수시 | ⇒ 수시 | ⇒ 협약일 ~ '25. 11. | ⇒ 수시 | ⇒ '25. 11. 이내 |

※ 추진 상황에 따라 방법/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3 신청기간 및 방법

- (공고 및 접수기간) 공고일 ~ 10월 31일(금) 18:00, 예산 소진시까지
- (신청방법)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(공고) 방문 → 신청서류 제출

| 구 분 | 비 고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
| 1.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| * PDF(직인날인본), 한글파일(직인미날인본) 모두 제출 | 서식1 |
| 2.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| | 서식2 |
| 3.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| * PDF(날인본) 제출 | 서식3 |
| 4. 청렴·성실의무이행·중복지원방지 서약서 | | 서식4 |
| 5. 사업자등록증 | | |
| 6. 법인등기부등본 | | |
| 7. 법인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(필요시) | *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본 | |
| 8.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| | |
| 9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| | |
| 10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| | |
| 11. 재무제표(최근 2년) | * '23년~'24년 *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및 정부24(www.gov.kr) 발급 *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원 제출(국세청 홈택스 발급) | |
| 12. 기업 및 전시제품 소개자료 | * 자체양식 | |

※ 제출파일은 PDF 형태로 업로드

4 평가방법 및 기준

- (평가방법)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류평가를 통해 7개 사 선정
 - 평가점수 및 심사의견은 비공개 원칙
 -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(예비진단) → 선정평가 (서면평가) → 결과통보
- (평가기준) 지원기업 평가 항목

| 구분 | 평가항목 | 배점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제품 및 서비스 확보 | 제품(서비스) 완성도 또는 구현 가능성 | 10 |
| | 제품(서비스) 우수성 | 10 |
| 사업성 | 계획(해외 진출, 홍보) 및 목표의 구체성 | 20 |
| | 자체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사업수행 의지 | 20 |
| 기대효과 | 전시회 참가를 통한 성과 기대효과 | 20 |
| 메타버스 연관성 | 제품 및 서비스의 XR 및 메타버스 연관성 | 20 |
| 합계 | | 100 |

- 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
- 평가점수의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최종 평가점수 산출
-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점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
- ※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상기 평가방법, 평가기준 등은 변경 가능
- ※동점자 발생 시, 사업성, 제품 및 서비스 확보, 기대효과 순차대로 고득점자 우선 선정,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 협의를 통해 결정

5 유의사항
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지원된 과제와 유사성과 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
-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지원금 사용 및 관리
 - 본 지원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, 본 과제를 수행·관리함에 있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,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,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 - 위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 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 규정과 그 부

속 지침 등에 따름

- 적용 규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신 규정을 적용
- 선정기업의 사업 수행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 순위자 선정 또는 추가모집 실시
- (신청자격 요건) 전시회 출품이 가능한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를 보유한 경남 지역 중소기업
 - 경남소재 본사, 지사, 공장 중 1개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
- (지원제외 대상)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| 구분 | 지원제외 대상 |
|----|---|
| 1 |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 |
| 2 | 기업이 휴·폐업 상태인 경우 |
| 3 |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,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태료, 관세, 산재·고용보험,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* 단,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|
| 4 |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* 단,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|
| 5 |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|
| 6 | 신청기업,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* 관련규정 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,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, 방법 및 절차) |
| 7 | 의무사항(보고서/성과실적 제출 등)을 불이행하거나, 각종 법령 위반(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)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, 정부지원사업,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|
| 8 | 제출기한 경과,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|
| 9 | 지원기간 중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|

○ (기타 유의사항)
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선정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(선정 결과는 신청기업 개별 통보)
- 접수된 서류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

-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,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
-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, 지원 금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
- 과제 종료 후, 선정기업은 (재)경남테크노파크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하여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3년간 이력 관리 등에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- 결과보고 시, 기업매출액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자료 제출 필수 (예: 전자세금계산서, 사대보험가입증명서 등)

6 문의처

- 사업 관련 문의

| 소속부서 | 담당자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경남정보산업진흥 본부 | 이명재 | 055-259-5084 | mjlee@gntp.or.kr |

. 끝.